

불법 산림형질 변경지 처리지침

1. 목적

산림을 적법한 절차없이 형질변경한 행위로 인하여 산림법 제118조(산림의 형질변경죄등)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임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허가를 제한하므로써 토지 활용상 큰 제약을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법률 규정상 제한사항이 없는 임지에 대하여는 합법적으로 허가처리하여 줌으로써 민원해소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함

2. 현황 및 문제점

가. 현황

- 불법형질변경지에 대하여 사법처리 되었던 사실 이외에는 타법 및 산림법상 제한사항이 없는데도 신규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실행코자 하나,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를 적법화 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형질변경 허가 불허

- 농림어업용 및 주된 주거용으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불법전용지에 대하여 '95. 6. 23 ~ '96. 6. 22까지 1년간 한 시적으로 임시특례규정(산림법 부칙 제9조)을 제정 양성화 조치한 바 있으나, 누락된 토지가 많아 민원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

※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사무처리
현황 : 15,871건

나. 문제점

- 불법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은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여도 이를 계속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어 민원발생요인이 되고 있음.

3. 개선사항

가. 개선사항 : 불법형질변경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개선

나. 대상지 : 산림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임지로서 산림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한 임지

다. 처리절차

- 산림법 규정에 의하여 불법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임지로서 산림으로의 복구보다는 타용도 사용이 효율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산림법 제90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복구비 예치 및 각종 부담금(전용부담금, 대체조림비 등)의 납부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산림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형질변경허가 처리